

창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나68060(본소), 2021나68077(반소) 판결 [계약금등 반환
청구의 소 · 매매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우승원, 진현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성찬, 이윤정, 강민기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1. 2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12023(본소),
2021가단12044(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0. 6. 8.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반환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0. 6.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20. 8. 24.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석축붕괴 사고의 발생 및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석축 재설치 공사 관련 약정1) 2020. 7. 초순경 폭우로 이 사건 부동산 내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1차 붕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석축 재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2) 2020. 8. 7.경 이 사건 부동산 내 석축이 다시 붕괴되는 사고(이하 '2차 붕괴'라 한다, 이하 1, 2차로 붕괴된 석축 부분을 합쳐 전체 석축을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20. 8. 17.경 석축 재설치 공사를 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를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합석한 피고의 오빠는 원고에게 석축 재설치 공사가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내용통지서 발송

피고는 2020. 10. 12. 원고에게 '무너진 석축은 원고의 요구대로 정밀한 설계에 의하여 견고하게 원상복구를 시켰고 준공까지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바, 위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2020. 10. 19.까지 지불해주시기 바라며 위 날짜까지 지불되지 않을 시에는 본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은 몰수한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이하 '피고 측 내용증명'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1) 피고가 피고 측 내용증명을 발송할 당시 석축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서나 설계도면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준공검사도 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 석축의 하자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 2) 피고는 2020. 10. 15. 석축 재설치 공사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 개발행위신청 서류를 취하하였는데, 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 3) 붕괴된 석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고의 청구 중 하자담보책임을 인한 계약해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석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2) 피고는 1차 붕괴 이후 건축설계사에게 설계용역을 맡기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석축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아 2020. 7. 8.부터 2020. 10. 30.까지 석축 재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 전에 석축 재설치 공사를 완성하고 2020. 10. 6. 관할관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해하여 준공검사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석축 재설치 공사를 한 것 이외에도 2021. 3. 19.부터 2021. 3. 26.까지 추가로 석축 재설치 공사를 하였고, 2021. 6.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불능, 이행지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를 한 바 없으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부적법하다.

4)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의 지급을 명백하게 거절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2조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82조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차 붕괴는 2020. 7. 초순경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 10.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석축 재설치 공사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석축이 붕괴된 이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당심의 함양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설계에 의하여 석축 재설치 공사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1차 붕괴 직후인 2020. 7. 8.부터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석축 재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0. 8. 4. 함양군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함양군 E 지상 석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20. 8. 24. 함양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위 개발행위신청 서류에는 F토목설계사무소가 작성(작성일자가 2020. 8.로 표기되어 있다)한 ‘우량농지부지조성공사’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내용증명 발송 당시 석축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서나 설계도면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1차 붕괴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하자 없는 상태로 보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2020. 10. 6. 함양군에 석축 재설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다가 2020. 10. 15. 기간만료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준공검사 신청을 자진 취하하였다(피고는 원고의 민원 제기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에 피고 측 내용증명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2020. 10. 19. 당시 피고는 석축 재설치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고의로 준공검사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신청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준공검사 신청을 취하한 이후에도 2020. 10. 30. 및 2021. 3. 16.부터 2021. 3. 26.까지 석축 재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1. 4. 6. 다시 함양군에 다시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2021. 6. 23. 함양군으로부터 우량농지 조성 목적 사업에 석축 공사를 포함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2020. 10. 15. 준공검사 신청을 취하한 시점에도 설계에 의하여 석축 재설치 공사를 하고 신청 서류를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을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약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석축 재설치 공사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석축 일부분이 붕괴됨으로써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하자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석축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만으로 이 사건 석축을 포함한 석축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석축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피고 주장: 약 4,500만 원)이 전체 매매대금(3억 원)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석축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2020. 8. 4. 관할관청에 제출한 개발행위신청 서류에 석축 재설치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였고, 2020. 8. 24.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복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필증도 교부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석축에 존재하는 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본래적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된 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및 인도를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석축을 보수할 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석축이 무너지자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약정상 석축 보수 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석축 재설치 공사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고가 이 사건 석축 재설치 완공 기한을 지체한 것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3)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0. 9. 중순까지 석축 보수를 완료하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석축 보수 의무는 선이행 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2020. 10. 14.경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8. 17. 원고에게 2020. 9. 중순까지 석축 보수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석축 재설치 공사가 2021. 3. 26.경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일은 원고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20. 8. 24.과 같은 날로 정하였는바,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0. 9. 중순경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석축 보수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석축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던 중 피고의 잔금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후에도 피고의 석축 재설치 공사 의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석축 재설치 공사 의무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피고가 석축 재설치 공사 의무를 뒤늦게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행거절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를 이행할 의사의 유무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가 2020. 10. 6. 관할관청에 제출한 개발행위 신청 서류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관할관청에 제출한 개발행위 신청서류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차 붕괴 이후 석축을 보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위와 같이 준공검사 신청을 취하한 이후에도 2020. 10. 30. 및 2021. 3. 16.부터 2021. 3. 26.까지 석축 재설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 4. 6. 다시 함양군에 다시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2021. 6. 23. 함양군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준공검사 신청을 취하한 것이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석축은 일부만 붕괴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석축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현재 이 사건 석축에 붕괴위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석축의 하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 사건 석축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반소 중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강은, 판사 조유리

